

고흥군의회 공고 제2026-4호

「고흥군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 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,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 및 「고흥군의회 회의 규칙」 제23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 합니다.

2026년 2월 26일

고 흥 군 의 회 의 장



## 고흥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# 1. 제안이유

- 국가의 존립과 공동체 안전을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1급, 2급 중상이자는 그 헌신의 결과로 중대한 신체적 제약을 안고 일상생활을 이어가고 있음
- 이에 상이등급 1급부터 2급까지의 국가유공자 중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을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에 포함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함

### 2. 주요내용

-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에 국가유공자 1, 2급 중상이자 추가(안 제8조)

### 3. 개정조례안: 붙임

### 4. 조례안 예고기간: 2026. 2. 26. ~ 3. 3. 【5일간】



[붙임 1]

## 고흥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고흥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사람 중 1급부터 2급까지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버스 이용이 어려운 사람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8조(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)</p> <p>①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교통약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<u>&lt;신설&gt;</u></p>  <p>2.·3. (생략)</p>  <p>② (생략)</p>	<p>제8조(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)</p> <p>①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사람 중 1급부터 2급까지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<u>버스 이용이 어려운 사람</u></p> <p>3.·4. (현행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
**□ 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」**

**제6조(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등)** ① 법 제16조 제9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. 다만, 제3호에 따른 교통약자(해당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를 포함한다)는 해당 시·군의 관할구역 안에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.

1. 중증보행장애인으로서 버스·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
2. 삭제
3. 버스·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노인 등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시·군의 조례로 정하는 사람
4.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

**□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**

**제14조(상이등급의 구분 등)** ① 법 제6조의4제3항에 따라 상이등급 구분 중 1급과 6급은 1항부터 3항까지로 세분한다.

- ② 신체상이의 판정 방법 및 운동기능장애 측정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.
- ③ 신체상이의 정도에 따르는 상이등급의 구분은 별표 3과 같다.
- ④ 별표 3에 따른 상이등급 구분표의 신체상이정도에 규정되지 아니한 신체 상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상이정도에 따라 같은 표의 신체상이 정도에 준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한다.

## 고흥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

1. 재정수반요인

- 「고흥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시행규칙」 제12조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고흥군 의안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제3호

3. 미첨부 사유

- 조례 개정 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

4. 작성자

작 성 자	경제산업과장 김춘원
연 락 처	061-830-6018

[붙임 2]

##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자치법규명: 고흥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성명(단체명): \_\_\_\_\_ (서명 또는 날인)

주 소: \_\_\_\_\_

전 화 번 호: \_\_\_\_\_

자치법규안 내용	찬 성 여 부		의 견	비 고
	찬성	반대		